

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직원(검사직) 공개채용 공고

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직원(검사직) 공개 채용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16. 8. 2

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

I. 채용인원 및 응시자격

채용분야	담당업무	인원	자격 요건
상용정규직 (검사직)	제품 검병	8명	공고일 기준 만60세 미만으로 학력, 연령에 관계없이 지원가능

II. 공고기간 및 원서접수

- 공고기간 : 2016. 8. 2 ~ 8. 12 18:00까지
- 접수기간 : 2016. 8. 2 ~ 8. 12 18:00까지
- 접수방법 : 온라인(www.jpdc.co.kr) 접수

III. 전형절차

서류전형 → 인성검사 → 면접심사 → 결격사유조회 → 임용

○ 전형별 합격자 선정 기준

- 서류전형, 인성검사 : 적·부 판정
- 면접전형 : 70점 이상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선정

VI. 제출서류

-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함
- 필수 제출서류
 - ① 이력서 / 자기소개서
 -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
 - ③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명서
 - ④ 주민등록 초본 (병역사항 기재분, 해당자에 한함)

⑤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/ 장애인 등록증 사본 (해당자에 한함)

※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의 경우 공고일 이후 국가보훈처(지방보훈지청) 발급분에 한함 (공고일 이전 발행분의 경우 가점 미부여되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)

⑥ 기타 응시원서 기록 사항 증빙 서류 원본 (예, 자격증, 경력증명서 등)

○ 필수 제출서류 원본은 면접 심사 당일 제출 (①, ② 제외)

※ 관계기관 사실여부 조회 후 기재사항 및 자격증 등이 허위 혹은 위조임이 판명되면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되며, 공사 규정에 따라 합격 취소한 날로부터 5년간 공사 채용 모든 분야 응시제한

V. 기타 유의사항

○ 교대제 운영에 따른 야간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

○ 수습임용 후 6개월간 수습기간을 운영하며, 수습직원에게 대해 직무수행 능력 등 평가 후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소질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는 정규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

○ 임용일 이후 정상 출근이 가능하여야 하며, 정상 출근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

○ 지원서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

○ 책임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, 최종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차순위 대상자순으로 임용여부 결정 가능

○ 공사 사정에 따라 임용 시 또는 수습 후 발령시 근무부서 및 근무지 변경 가능

○ 식품위생법 제40조, 먹는물 관리법 제29조 등에 의거 건강검진 결과 부적격 판정 시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

※ 근무 불가능한 질병

◦ 장티푸스, 폐결핵, 전염성 피부질환(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), 파라티푸스, 세균성 이질 병원체의 감염, 소화기계통 전염병, A형 간염, 살모넬라, 쉬겔라, E형 간염

○ 제출서류는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요청시 반환하며, 180일 이후 불합격자의 제출서류는 폐기함

○ 기타 문의사항은 홈페이지 “채용문의”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인사교육팀(☎064-780-3800)로 문의

VI. 전형일정

구분	일정	비고
채용공고 및 원서접수	8. 2 ~ 8. 12	온라인
인성검사	8. 17 (예정)	
면접심사	8. 23 (예정)	
합격 예정자 발표	8. 24 (예정)	
결격사유 조회	8. 24 ~ 8. 31 (예정)	신원조회 및 신체검사
임용	9월 중 (예정)	

※ 공사 인사규정 제14조 (결격사유)

1.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
2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4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5.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6.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,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7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8.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
9.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